

『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20년 11월 17일

나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20년 11월 18일

라. 상정일자 : 2020년 11월 26일

제24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경제기획국장 양 기 철

나. 제안이유

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정에 따라 조례 위임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미사랑상품권 발행과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, 제2조)
- 상품권의 종류 및 기재사항 추가(안 제4조제3항 및 제4항)
- 판매대행점 협약 및 가맹점 등록에 관한 사항(안 제6조, 제8조)
- 가맹점 및 사용자 준수사항(안 제10조, 제12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
- 합 의 : 기획예산과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강 창 조

- 본 「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,
 - 상위법인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이 2020년 7월 2일 시행됨에 따라 구미사랑상품권 발행과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,
 - 불법환전과 같은 지류 상품권의 단점을 보완하고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에 따른 상품권의 모바일 전환추세에 대응할 것으로 기대되어 향후 소상공인의 수익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